

제 1121 호
1985. 6. 2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시장 임 모 현
 편집인 : 서울특별시 관 조 남 훈
 전화 : 731-6111-8
 안 배 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 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416 호 : 주택개량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3

제 417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 3

제 418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지적승인 4

제 41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 5

제 420 호 : 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 시행허가 (변경) 고시 5

제 421 호 : 도시 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6

제 422 호 : 도시 계획시설 (주차장) 변경결정 6

제 423 호 : 도시 계획시설 (하수도) 결정 7

◎ 사 령

공											
관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16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 470 호 (73.12.1) 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 140 호 (76.8.26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 (81.1.30) 로 사업계획결정된 홍은제 4 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 5 조, 같은법 제 6 조의 2, 같은법 제 8 조,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6.26
서울특별시장

가. 내 역

구역명	위 치	면 적
홍은제 4 구역	서대문구홍은동 17, 24 번지 일대	94, 220 평방미터

- 나. 사업시행지구 결정: 별첨 (생략)
- 다. 사업계획변경 결정도서: 별첨 (생략)
- 라. 사유: 일부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일부 변경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17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기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4 호 (78.7.3) 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 시설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동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

의거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허가하였기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6.26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동작구노량진동 16-1 외 4 필지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, 서울수산청과시장	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동작구노량진동 13-8 서울수산청과시장 노상욱 라. 사업시행규모 : 대지면적 5,100㎡ (단위 : ㎡)
--	--

구 분	기 준	증 축 면 적	계 (증축후면적)
건 축 면 적	2,078.01	882.99	2,961
건 축 연 면 적	3,604.67	1,914.99	5,519.66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: 1985. 7. 1 준공예정일 : 1985.12.31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 - 동작구 도시정비과 비치 사.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토지,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 (생략) ○ 도시계획 시설 (시장) 지적 승인조서 (시장)	◎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 1. 서울특별시 고시 386 호 (85.6.14)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된 성북구길음동 540일대 (시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5.6.26 서울특별시장
---	--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 (㎡)	비 고
신 설	소매시장	성북구길음동 540 외 3 필지	9,093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1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

1. 서울시 고시 제 122 호 (83.3.3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된 성북구정릉동 17-6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85.6.26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정릉동 산 17-6 번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 시행 (체육관시설 및 운동장설치)

다. 사업의 시행면적 :

체육관 3,320 m²

운동장 3,865.9 m²

라. 사업의 시행자 주소, 성명 :

성북구 정릉동 산 16-1

학교법인 성한학원 이사장

마. 착공 및 준공예정일

구 분	당 초	변 경
체육관시설 및 운동장 설치	'83.3.30-'85.3.30	'83.3.30-'87.3.30

바. 위치 및 평면계획도:별첨(도면생략)
※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0 호

**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
사업허가 (변경) 고시**

1. 서울시 고시 제 394 호 (81.10.31)

로 시행허가되고 서울시 고시 제 373 호 (84.5.30) 로 시행허가 변경된 구로구구로동 339-29 일대 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제 27 조의 2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
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6.26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 : 구로구구로동 339-29 일대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
- 3)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-2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상만
- 4) 사업시행규모
 당초 : 대지면적 40,992 m²
 건축면적 5,916.06 m²
 건축연면적 27,061.56 m²
 변경 : 대지면적 40,992 m²
 건축면적 6,951.86 m²
 건축연면적 28,237.52 m²

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
당초 : 1981.11 - 1985.10.30

변경 : 1981.11 - 1986.10.30

6)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1호

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만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6.26
서울특별시장

시설명	위 치	면 적 (m ²)	비 고
주차장	중구명동 1가 10-1 및 을지로 2가 195-8 일대	1,498.3 m ²	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2호

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변경결정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

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

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		인다.		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		1985.6.26 서울특별시장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기 정 변 경	주차장	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-1 일대	61,680 ㎡ 0	착 격
※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생략)				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3 호		도시계획법 제 12 조 4 항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.		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결정		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		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		1985.6.26 서울특별시장		
○ 시설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하수도	성동구 응봉동 203 일대	2,918 ㎡	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
사 령				
◎ 1985년 6월 30일자			령 제 224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	
최영환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용산구 시민봉사실	지방행정주사	

성명	발령사항	전부서	직급
이대운	지방공무원법 제 66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도봉구재무과	지방행정주사
조귀환	"	마포구환경과	"
곽광수	"	강서구총무과	"
이천수	"	동작구주택과	"
박범순	"	강동구마천 2 동	지방행정주사보
이용섭	"	아동병원	지방행정서기
정영옥	"	건설행정과	지방전기수 (기능직 10 등급)
김정태	"	북부건설사업소	지방기계장 (기능직 7 등급)
정용진	"	건설자재사업소	"
이원근	"	남부건설사업소	지방기계원 (기능직 8 등급)
김영수	"	아동병원	지방기관수 (기능직 9 등급)

© 1985년 6월 26일자

령 제 225 호

성명	발령사항	전부서	직급
백영현	기획관리실 (대단위사업점검 요원) 파견 (85.7.1-11.30)	종합건설본부	지방토목기과
김영환	"	도시계획과	지방토목기사보
변상교	기획관리실 (대단위사업점검요 원) 파견 (85.6.26-11.30)	도로과	지방토목기사
한인수	"	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
차재길	관악구	구로구	"

◎ 1985년 6월 26일자		령 제 225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황정율	건설자재시험소 수공시험계 장파전 (85.6.26-9.4)	연료과 연료개발계장	지방화공기과
		령 제 227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조안중	상공부전출을 명함.	성동구개여동	지방행정주사보
서울특별시			